

춘천지방법원 2018. 5. 30 선고 2017가단272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망 B의 상속인

1. C
2. D
3. E [미국명: F]
4. G
5. 망 H의 상속인
- 가. I
- 나. J
- 다. K
- 라. L

변론 종결 2018. 5. 16.

판결 선고 2018. 5. 3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M 답 397m², N 답 571m²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. 5. 29.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주문 기재 토지를 뜻함)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판사정성균

별지